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0년 2월 24일 (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 :

[집합투자규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2.21 시행,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및 제 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따른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개정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① ~ ⑥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u>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u> |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 |
| [부칙] | <신 설> | <u>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u> |

[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직전 회계년도 기준 : 2009.12.18)
- 작성기준일 변경(2009.9.28→2010.02.18)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산운용회사 운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2.21 시행,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및 제 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따른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
-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표지] 4. 작성기준일 | <u>2009년 9월 28일</u> | <u>2010년 2월 18일</u> |
| [표지]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u>2009년 10월 15일</u> | <u>2010년 2월 24일</u>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 <u>2009.10.</u>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 <u>2009.10.15</u>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사항 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p> | <p>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개정 /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 격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 -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 운용규모 등) 개정 /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p> <p><신설></p> | <p>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개정 /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 격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 -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 운용규모 등) 개정 /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p> <p>2010.02.24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직전 회계년도 기준 : 2009.12.18) / -작성기준일 변경(2009.9.28→ 2010.02.18)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산운용회사 운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2.21 시행,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및 제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따른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 사항 반영 /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2009.09.28 현재)</p> <p>① 책임운용전문인력</p> <table border="1" data-bbox="529 1424 981 1960"> <tr> <td>성명</td> <td>박찬</td> </tr> <tr> <td>생년</td> <td>1971</td> </tr> <tr> <td>직위</td> <td>팀장</td> </tr> <tr> <td rowspan="2">운용 현황</td> <td>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td> <td>19개</td> </tr> <tr> <td>다른 운용 자산규모</td> <td>18,966억</td> </tr> <tr> <td>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d> <td><생략></td> </tr> </table> | 성명 | 박찬 | 생년 | 1971 | 직위 | 팀장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19개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18,966억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생략> | <p>(2010.02.18 현재)</p> <p>① 책임운용전문인력</p> <table border="1" data-bbox="1008 1424 1460 1960"> <tr> <td>성명</td> <td>박찬</td> </tr> <tr> <td>생년</td> <td>1971</td> </tr> <tr> <td>직위</td> <td>팀장</td> </tr> <tr> <td rowspan="2">운용 현황</td> <td>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td> <td>19개</td> </tr> <tr> <td>다른 운용 자산규모</td> <td>18,248억</td> </tr> <tr> <td>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d> <td><현행과 같음></td> </tr> </table> | 성명 | 박찬 | 생년 | 1971 | 직위 | 팀장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19개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18,248억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현행과 같음> |
| 성명 | 박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 | 19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19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18,966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박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 | 19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19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18,248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 <p>이 투자신탁의 Class C<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u>비과세 및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u></p> | <p>이 투자신탁의 Class C<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u>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u></p>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4).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주요 내용</p> | <p><u><변경전1></u></p> | <p><u><변경후1></u></p>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 | <p>- <u>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갱신</u></p>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 | <p>- <u>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갱신</u></p> |

| | | |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 | <p>- 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예시” 갱신</p> |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 <p>(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u>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u></p> <p>②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그림1. 변경전></u></p> <p>③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u>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u></p> | <p>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p> <p>(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그림1. 변경후></u></p> <p>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

| | | |
|--|---|--|
| | <p><u>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u></p> <p>④ <u>그러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u></p> <div data-bbox="531 801 981 166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u>[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u> <u>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u></p> <p><u>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u></p> <p><u>나.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u></p> <p><u>다.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u></p> </div>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①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u></p> | <p><삭 제> <u>사유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일몰</u></p> <p><삭 제> <u>사유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일몰</u></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삭 제></p> |
|--|---|--|

| | | |
|--|---|--|
| | <p><u>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u> <u>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p>② 수익자는 <u>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u>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p> <p>다만 해당 <u>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KOSPI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p> <p>(3) 과세상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p> <p>① <u>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u> | <p>수익자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u>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u>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u>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p> <p><삭 제></p> |
|--|---|--|

| | | |
|--|--|--|
| | <p><u>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u></p> <p>(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u>투자신탁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u>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u></p> <p>② <u>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u></p> |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u>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u></p> <p>② <u>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u>(5)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u> 中 <7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u>2009.09</u> 기준</p> <p><u>※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u></p> <p><u>※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u></p> <p>(6) 적립식 주식형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p> | <p><u>(4)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u> 中 <7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u>2010.02</u> 기준</p> <p><u>※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u></p> <p><u><삭 제> : 공모펀드 거래세 일몰</u></p> <p>(5) 적립식 주식형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 <u>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u> 으로 1. 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u>운용실적 갱신</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 <p>기준일 : <u>2009.9.28</u> 현재 / 설정액 기준 /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529 1619 983 1915"> <tr> <td rowspan="5">집합 투자 기구 종류</td> <td rowspan="5">증권</td> <td>주식형</td> <td><u>2,965</u></td> </tr> <tr> <td>채권형</td> <td><u>17,274</u></td> </tr> <tr> <td>혼합형</td> <td><u>1,434</u></td> </tr> <tr> <td>파생상품</td> <td><u>22,852</u></td> </tr> <tr> <td>재간접</td> <td><u>2,965</u></td> </tr> <tr> <td colspan="2">부동산</td> <td><u>0</u></td> </tr> </table> | 집합 투자 기구 종류 | 증권 | 주식형 | <u>2,965</u> | 채권형 | <u>17,274</u> | 혼합형 | <u>1,434</u> | 파생상품 | <u>22,852</u> | 재간접 | <u>2,965</u> | 부동산 | | <u>0</u> | <p>기준일 : <u>2010.02.28</u> 현재 / 설정액 기준 /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1008 1619 1461 1915"> <tr> <td rowspan="5">집합 투자 기구 종류</td> <td rowspan="5">증권</td> <td>주식형</td> <td><u>3,397</u></td> </tr> <tr> <td>채권형</td> <td><u>17,337</u></td> </tr> <tr> <td>혼합형</td> <td><u>1,918</u></td> </tr> <tr> <td>파생상품</td> <td><u>19,753</u></td> </tr> <tr> <td>재간접</td> <td><u>467</u></td> </tr> <tr> <td colspan="2">부동산</td> <td><u>0</u></td> </tr> </table> | 집합 투자 기구 종류 | 증권 | 주식형 | <u>3,397</u> | 채권형 | <u>17,337</u> | 혼합형 | <u>1,918</u> | 파생상품 | <u>19,753</u> | 재간접 | <u>467</u> | 부동산 | | <u>0</u> |
| 집합 투자 기구 종류 | 증권 | | | 주식형 | <u>2,965</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u>17,274</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형 | <u>1,434</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 <u>22,852</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간접 | <u>2,965</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 | <u>0</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 투자 기구 종류 | 증권 | 주식형 | <u>3,397</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u>17,337</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형 | <u>1,918</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 <u>19,753</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간접 | <u>467</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 | <u>0</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혼합자산</td> <td>0</td> </tr> <tr> <td>MMF</td> <td>1,334</td> </tr> <tr> <td>총계</td> <td>45,869</td> </tr> </table> | 혼합자산 | 0 | MMF | 1,334 | 총계 | 45,869 | <table border="1"> <tr> <td>혼합자산</td> <td>0</td> </tr> <tr> <td>MMF</td> <td>4,254</td> </tr> <tr> <td>총계</td> <td>47,126</td> </tr> </table> | 혼합자산 | 0 | MMF | 4,254 | 총계 | 47,126 |
| 혼합자산 | 0 | | | | | | | | | | | | | |
| MMF | 1,334 | | | | | | | | | | | | | |
| 총계 | 45,869 | | | | | | | | | | | | | |
| 혼합자산 | 0 | | | | | | | | | | | | | |
| MMF | 4,254 | | | | | | | | | | | | | |
| 총계 | 47,126 | | | | | | | | | | | | | |
|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p> |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u>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u></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u>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 | | | | | | | | | | | |

| | | |
|---|---|--|
| | <p>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p>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u>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u> ○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u> ○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u> ○ <u>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u> ○ <u>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u> ○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u> ○ <u>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u> ○ <u>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u> ○ <u>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
|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3) 자산보</p> |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u>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u>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p> |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u>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u>가 발생한</p> |

| | | |
|-----------------|---|--|
| <p>관·관리보고서”</p> | <p>·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u>제공</u>하여야 합니다. <u>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1) <u>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u> 2) <u>투자운용인력의 변경</u> 3) <u>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u></p> | <p>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u>교부</u>하여야 합니다.</p> <p><u>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u></p> <p><u>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
|-----------------|---|--|

[간이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직전 회계년도 기준 : 2009.12.18)
- 작성기준일 변경(2009.9.28→2010.02.18)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

| 구분 | 정정전 | 정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 4. 작성기준일 | <u>2009년 9월 28일</u> | <u>2010년 2월 18일</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u>2009년 10월 15일</u> | <u>2010년 2월 24일</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II.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 <p>(<u>2009.09.28</u> 현재)</p> <p>① 책임운용전문인력</p> <table border="1" data-bbox="528 1429 984 1955"> <tr><td>성명</td><td>박찬</td></tr> <tr><td>생년</td><td>1971</td></tr> <tr><td>직위</td><td>팀장</td></tr> <tr><td rowspan="2">운용 현황</td><td>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td><td><u>19개</u></td></tr> <tr><td>다른 운용 자산규모</td><td><u>18,966억</u></td></tr> <tr><td>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d><td><생략></td></tr> </table> | 성명 | 박찬 | 생년 | 1971 | 직위 | 팀장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u>19개</u>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u>18,966억</u>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생략> | <p>(<u>2010.02.18</u> 현재)</p> <p>① 책임운용전문인력</p> <table border="1" data-bbox="1007 1429 1463 1955"> <tr><td>성명</td><td>박찬</td></tr> <tr><td>생년</td><td>1971</td></tr> <tr><td>직위</td><td>팀장</td></tr> <tr><td rowspan="2">운용 현황</td><td>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td><td><u>19개</u></td></tr> <tr><td>다른 운용 자산규모</td><td><u>18,248억</u></td></tr> <tr><td>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 성명 | 박찬 | 생년 | 1971 | 직위 | 팀장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u>19개</u>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u>18,248억</u>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현행과 같음> |
| 성명 | 박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 | 19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u>19개</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u>18,966억</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박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 | 19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 현황 |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수 | <u>19개</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u>18,248억</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II.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p> | | <p>- <u>작성기준일 변경(2009.9.28→2010.02.18)에 따른 투자실적 추이 개정</u></p> |
| <p>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中 ‘1. 수수료 및 보수’,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 | <p>- <u>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갱신</u></p> |
| <p>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中 ‘2. 과세’</p> | | <p>-<u>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 반영</u> -<u>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u></p> |
| <p>IV. 요약 재무정보</p> | | <p>- <u>직전 회계연도 (2009.12.18) 기준으로 요약 재무정보 갱신</u></p> |